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의안 번호	241
----------	-----

제출년월일 : 2001. 12. 7.
제 출 자 :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 총무재무위원회가 실시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서초구가 집행한 행정사무가 구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추진 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

1.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입법·재정·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의 행사를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통하여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함.

2. 감사대상기간 : 2000. 7. 1 ~ 2001.11.30

3. 감사실시기간 : 2001.12. 1(토) ~ 2001.12. 7 (금) 7일간

4.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 감 사 대 상 :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동사무소
- 감사 위원장 :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 감 사 위 원 : 정길자 의원, 최정규 의원, 권금택 의원, 김옥자 의원
김진영 의원, 정웅섭 의원,

○ 동사무소 감사반 구성

감사반	감사대상동		감사위원	감사보조자
제1반	서초1동, 서초2동, 서초4동	3인	정용섭, 천승수, 장영화	홍승찬
제2반	서초3동, 방배1동, 방배3동	2인	허명화, 장경주	민기홍
제3반	잠원동, 반포1동, 반포3동	2인	김열호, 권금택	김종열
제4반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4동	2인	김용재, 정길지	김상남
제5반	방배본동, 방배2동, 방배4동	2인	김옥자, 박찬선	이순식
제6반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2인	이호혁, 최정규	김복종

※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없음.

5. 감사장소

- 위원회직 감사(의회사무국) — 제1위원회 회의실
- 동사무소 (18개동) — 동장실 또는 회의실

6. 감사 착안사항

- 행정사무 집행의 효율성
- 조직운영의 합리성
-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 사업의 타당성
- 경상직경비 집행의 적정여부
- 기타 제반사항

7. 감사결과 처리의견

[총 괄]

구 분		계	시정 또는 개선요구	건의	처리요구	기 타
국 별	합 계	74	57	12	5	
	감사담당관	1		1		
행정 관리국	계	37	30	5	2	
	공 통	2	2			
	총무과	11	8	2	1	
	자치행정과	16	13	2	1	
	문화공보과	8	7	1		
	민원어권과					
기획 재정국	계	18	14	3	1	
	기획예산과	9	8	1		
	세무과	4	1	2	1	
	세무1과	2	2			
	세무2과	3	3			
생활 복지국	계	18	13	3	2	
	공 통	1	1			
	청소행정과	10	6	3	1	
	사회복지과	2	2			
	가정복지과	3	2		1	
	위생과	2	2			
	산업환경과					

[감사담당관]

소관부서	구분	처리 의견 (지적사항)
감사담당관	건의	<p>o 공공시설 공사에 대한 감사 철저</p> <p>매년 복지시설, 동청사 등 공공시설 건축시 건축비 평당 단가는 일반적 수준보다 건축비가 높은 이유를 감사를 통하여 사실규명 하여 주시고, 건축비는 경우에 따라서는 배 이상 높은데 비하여 시공 후 건축물은 대체적으로 부실공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2002년 세출예산에도 보면 공공건축비가 계상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감사실의 명예를 걸고 철저한 확인과 사실 조사하여 재발을 불식시킴으로 건전한 행정재산의 보존과 불필요한(보수, 보강)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감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결 (지적사항)
행정관리국 공통사항	시정 및 개선요구	<p>o 투자사업의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예산편성 사업취소 변경 등 시행적오 예방</p> <p>투자사업은 초기부터 치밀한 당위성과 가능성을 점검하여 계획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가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허명화 위원 〉</p>
행정관리국 공통사항	시정 및 개선요구	<p>o 사업취소 보류로 인한 과다불용 방지.</p> <p>중·단기 사업예산 편성시 충분한 사전심사 분석하여 세출예산의 불용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여 그로 인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과정에서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사업계획에 신중한 검토가 사료됨.</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총 무 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부서별 정원 책정 및 합리적 배치</p> <p>행정관리국 내 총무과, 자치행정과 및 민원여권과의 3개 과가 정원대비 현재원이 총무과는 5명, 자치행정과는 3명, 그리고 민원여권과는 2명이 초과되는 바 민원여권과는 주민들의 민원수요가 많아서 정원 초과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이겠으나 자치행정과는 최근에 신설된 조직임에도 정원 예측을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각종 행사에 지나치게 많은 인력동원을 위해 현재원을 늘려 놓은 것인지 문제가 있으므로 정원관리를 제대로 하기 바람. 특히, 자치행정과는 정원 18명 대비 3명이 증가된 것은 부러 17%가 초과되는 바 대부분의 과 조직이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는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정원 초과되는 것임. 각부서별 행정에 있어 아직도 주민을 서초구의 주인으로서 생각하는 인식이 부족하고 직원 각 개인이 서초구청을 대표하고 있다는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과도한 홍보를 지양하고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여 적정한 곳에 적정인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지적사항)
총 무 과	시정 및 개선요구	<p>○ 민간보조금 예산지원 및 집행기준 준수</p> <p>금년도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경상보조 지급실태를 보면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및 재향군인회에 각각 3천 만원, 1천 만원 및 5백 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의 집행 상황을 보면 민주평통에 2천2백5십 만원, 자유총연맹에 8백 만원 그리고 재향군인회에는 6백 만원을 집행하여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 지출하였는 바 다른 사업성 예산과는 달리 이러한 보조금 성격의 예산은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총 무 과	시정 및 개선요구	<p>○ 공무원 책임의식 강구 인력관리 철저</p> <p>각 부서별 행정에 있어 아직도 주민을 서초구의 주인으로서 생각하는 인식이 부족하고 직원 각 개인이 서초구청을 대표하고 있다는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여 적정한 곳에 적정인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허명화 위원 〉</p>
총 무 과	건의 의	<p>○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은행 대출이자 부담금 경감 방안 강구</p> <p>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가계자금대부를 지원하여 줌에 따라 직원 338명에 대해서 203억원 상당 규모의 대부금을 주선해 주고 있는 바, 이를 분석해 보면 1인당 6,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이자부담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소관부서	구분	처리 의견 (시정사항)
총무과	시정 및 개선요구	<p>○ 합리적 예산편성 및 업무과다부서 개편검토</p> <p>가정복지과는 사업예산이 많아 계속 불용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바, 무계획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한 불용액을 계속발생 시킬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시 철저한 검토 후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인력이 부족하다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1.2과로 분할관장하는 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총무과	시정 및 개선요구	<p>○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원활한 지원 촉구</p> <p>부서별 직원 동호인클럽지원 등 예산편성기본 지침에도 경비성 성격의 예산임을 인식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을 그 기본지침에 맞는 적절한 금액을 지원하여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되어 사기진작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 줄 것을 시정하여 주길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총무과	시정 및 개선요구	<p>○ 의회 제출, 각종자료, 업무보고 철저</p> <p>구의회 임시회·정례회 보고되는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시 주무과장 책임하에 정확하게 작성 보고, 제출토록 해야할 것이며, 업무보고와 자료가 서로 상이하고 현장 사실과도 상이한 사례도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 정확한 행정자료 작성 제출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총무과	처리요구	<p>○ 구와 동의 합리적 인사관리 철저</p> <p>1,270명의 직원들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구와 동(장기근속) 적절한 순환 보직으로 직급 승진 등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특히 동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유념하여 공평한 인사관리를 권고함.</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총무과	시정 개선요구	<p>○ 청사주변 분뇨냄새 제거</p> <p>민원여권과 후면 공간과 구청에서 지하철 입구사이 맨홀 부근에서 분뇨냄새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원인을 찾아 제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제 리 의 건 (지적사항)
총 무 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서초구청사 음식물 냄새 제거 방안강구</p> <p>서초구청사지하구내식당에서 조리되는 음식물냄새가 1,2층 청사내로 발산되고 있는 바, 별도의 구조물등을 설치하여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총 무 과	개선요구	<p>o 가정복지과의 청소년업무를 사회과로 업무분장 이관하는 개선안 검토요망.</p> <p>가정복지과는 소관업무가 현실적으로 과다하므로 이로인한 업무추진 성과에도 부진한 실정이 발생하는 등 타구 사례도 참고하여 사회과로 업무분장 이관하는 대안을 적극 검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자치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각급학교 보조금 지원기준 제정 및 지원 철저</p> <p>각급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금년도 예산에 7억 원을 책정해 놓은 바 있으나 각급 학교에서 자금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억1천여 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각급 학교 46개교 중 33개 학교에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원칙, 지급절차, 지급후 사후관리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추가 집행함으로써 각급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수요를 충족시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자치행정과 각 동	시정 및 개선요구	<p>o 반상회 개최방안 강구</p> <p>동행정에 있어 각 동의 직원이 감소되어 제한된 직원으로 나름 데로 각 동별 차별화사업을 전개하고 주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짐. 그러나 우리구가 통장시스템을 바꾼 후 반상회 개최가 저조 하다고 분석됨. 반상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반상회 개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매월 통장 회의시 반상회가 정착될 때까지 개최현황을 확인해, 복지 함</p> <p style="text-align: right;">〈 허명화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지적사항)
자치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불합리한 동 경계조정 시정. 현재 서초구 18개동 일부 동 경계가 불합리하므로 동인구·행정서비스 환경여건, 고속도로를 사이에 둔 경계 등으로 현실적으로 균형적 행정서비스 관리가 불합리하고,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편의를 위해 동 경계 조정을 적극 추진 검토 후 시정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자치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동사무소 직원 사기 진작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직원이 감소되었으나, 업무량은 그대로이고, 구청 직원에 비해 7급에서 6급 승진시 동사무소 직원이 순위가 밀리는 등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동에서 5년이상 근무자를 구청 근무자와 순환보직 시킬 용의는 없는지와 현재 동 직원의 정원이 적정한 것인지? -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줄일 방법은 없는지? <p style="text-align: right;">〈 김창기 위원 〉</p>
자치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및 위원구성 지연 이유 동기능 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동사무소 개보수 등으로 동 실정에 맞게 자치센터를 만들어 P.C 교육, 독서방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바, 해당교 육생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고 운영실적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함에도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p> <p style="text-align: right;">〈 권금택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사적사항)
자치행정과	건의,시정	<p>o 통·반장에게 지급한 방독면 관리방법 검토</p> <p>통·반장 5,820명에게 화재검용 방독면을 1차로 2001. 10. 29경에 지급하면서 통장은 정확하게 지급되었으나, 변동이 많은 반장에게는 어떻게 지급되었으며, 또한 반장 교체시 어떻게 회수하고, 재지급하는지?</p> <p>그리고 이미 반장에게 지급한 방독면을 해당 통장이 관리보관 하는 방법은 어떤지?</p> <p style="text-align: right;">〈 김창기 위원 〉</p>
자치행정과 각 동	건의 의	<p>o 민방위 통대장 공석과다로 민방위대원 관리 부실</p> <p>현재 18개동의 민방위통대장 보직 정원은 749명이어야 하는데 현재 위촉된자는 696명으로 43명의 통대장이 미복직된 실정임.</p> <p>각 동장은 공석중인 민방위통대장을 우수자원으로 조속히 위촉하여 민방위기본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와 제27조 지침규정대로 임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김열호 위원 〉</p>
자치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각종재해(폭우 및 폭설)시 통민방위대장 역할 수행 대책 강구</p> <p>현재 각동 통장이 자원봉사제로 운영됨에 따라 폭설 및 폭우에 대비한 통민방위대장의 역할 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며, 향후 각종재해시 신속하고 원활한 역할수행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부여 등 철저한 대책 및 개선을 요구함.</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소관부서	구분	처리 의 건 (지적사항)
자치행정과 각 동	건의	<p>각동 민방위통대장 위촉행정절차 미준수로 법정사무 불이행시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벌칙규정 적용관련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6항에 통·리·민방위대장은 통·리장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p> <p>기본법 제17조 ①항에서는 민방위대원은 20세~45세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한자로 규정하였고 동조 ②항에서는 ①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남자 및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구관하 18개동에서는 민방위통대장으로 위촉된 696명중 600여명이 여자와 45세이상자로서 지원절차를 밟아 위촉하여야 하는데, 제반행정절차를 이행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장위촉이 자원봉사자로 됨으로 하여 자동적으로 통대장도 자원봉사가 위촉됨으로서 법정사무를 처리하여야할 통대장이 과오를 범했을시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벌칙규정에 의거 의법처리하여야 하는데 매우 어려울 것임. 조속히 민방위통대장의 위촉절차를 준수하여 위촉함으로써 법적하자가 없도록 시정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김열호 위원 〉</p>
자치행정과	처리요구	<p>o 동청사 누수방지공사 시행절차</p> <p>2000년도에 서초4동 청사 누수방지공사를 했는데 또다시 누수가 되고 있는데 하자보수공사가 기간이 얼마나 되며 동절기에 공사를 해야 할 것인지, 철저한 대책을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자치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각동별 민원대 담당실명 명패제 실시(여부)요망.</p> <p>동기능 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살시에 따른 질높은 행정 서비스 수준향상의 일환으로 각동별 민원대 위 담당자 실명명패제 실시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친절행정. 책임 행정으로 신뢰성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요망함.</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치 리 의 건 (지적사항)																																								
자치행정과 각 동	시정 및 개선요구	<p>o 통구분을 동별형평에 맞게 구분 요.</p> <table border="1" data-bbox="584 389 1308 645"> <thead> <tr> <th>NO</th> <th>동 별</th> <th>인 원</th> <th>통 수</th> <th>통장1인당인구</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서초1동</td> <td>16,000명</td> <td>37</td> <td>433명</td> </tr> <tr> <td>2</td> <td>서초2동</td> <td>20,400명</td> <td>49</td> <td>417명</td> </tr> <tr> <td>3</td> <td>서초4동</td> <td>24,000명</td> <td>67</td> <td>359명</td> </tr> </tbody> </table> <p>통장 및 민방위대장의 1인당 수용인구가 동별형평에 맞지 않음. 통장 및 민방위대장의 1인당 수용인구를 800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향후 민방위 수당을 지급할 시 동별 통 구분을 각 동별 형평에 맞게 조정요망함.</p> <p style="text-align: center;">조 정 안 검 토</p> <table border="1" data-bbox="584 1008 1308 1263"> <thead> <tr> <th>NO</th> <th>동 별</th> <th>인 원</th> <th>통 수</th> <th>통장1인당인구</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서초1동</td> <td>16,000명</td> <td>20~22</td> <td>800여명</td> </tr> <tr> <td>2</td> <td>서초2동</td> <td>20,400명</td> <td>25~27</td> <td></td> </tr> <tr> <td>3</td> <td>서초4동</td> <td>24,000명</td> <td>30~33</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천승수 위원 〉</p>	NO	동 별	인 원	통 수	통장1인당인구	1	서초1동	16,000명	37	433명	2	서초2동	20,400명	49	417명	3	서초4동	24,000명	67	359명	NO	동 별	인 원	통 수	통장1인당인구	1	서초1동	16,000명	20~22	800여명	2	서초2동	20,400명	25~27		3	서초4동	24,000명	30~33	"
		NO	동 별	인 원	통 수	통장1인당인구																																				
1	서초1동	16,000명	37	433명																																						
2	서초2동	20,400명	49	417명																																						
3	서초4동	24,000명	67	359명																																						
NO	동 별	인 원	통 수	통장1인당인구																																						
1	서초1동	16,000명	20~22	800여명																																						
2	서초2동	20,400명	25~27																																							
3	서초4동	24,000명	30~33	"																																						
자치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 방안</p> <p>각 동·통(751통)·반(5,172반)별 반상회 운영실적이 점차 부진한 사례로 인해 구정·동정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웃 간의 장담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사라져 가는 실정인 바 관련규정에 의한 반상회 운영활성화 촉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자치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민간보조금 예산지원 및 집행기준 준수</p> <p>금년도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경상보조 지급실태를 보면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및 재향군인회에 각각 3천 만원, 1천 만원 및 5백 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의 집행 상황을 보면 민주평통에 2천2백5십 만원, 자유총연맹에 8백 만원 그리고 재향군인회에는 6백 만원을 집행하여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 지출하였는 바 다른 사업성 예산과는 달리 이러한 보조금 성격의 예산은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자치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구와 동에 신속한 업무연락 체제 강구</p> <p>구 행정은 일선동의 민원 수요충족을 위한 수단적 선결기구로서 각종 발생하는(도로·하수·공원·토목 등) 복지시설공사 시행 시에나, 또는 각 동에서 사전업무 숙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 즉시 동에 행정 통보되는 행정구조적 통합기능이 이뤄져야 하고, 공사에는 현장확인 감독으로 위험시설물 발생에는 사전조치로 일선 동에서 사후보다 사전 행정조치로 효율적 행정체제 전환개선 조치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육자 위원 〉</p>
자치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각 과 업무미숙 발생의 최소화 철저</p> <p>2001년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동 행정업무 중 주민등록 분실·재발급 업무수행에서 수수료 미징수한(14건 140,000)사례, 노인교통수당 미지급 대상자에게 착오 지급한 발생사실 등 감사에 지적된 사례는 향후 이러한 행정 과오에는 그 책임을 강하게 행정조치 하여야 할 것이며, 사전업무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육자 위원 〉</p>

소관부서	구분	처리 의견
문화공보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과중한 홍보성 예산 지향</p> <p>홍보성예산의 편중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다한 홍보를 지양하고 구민을 위한 사업에 주력 하여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허명화 위원 〉</p>
문화공보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서초조형예술원 운영활성화 방안강구</p> <p>서초조형예술원의 위탁관리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구청에서 직영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내년도 예산에도 4억 9백만원을 편성으로 운영개선을 위해 독서실 운영 등 활성화 계획이 있으나, 이것은 예산낭비일 뿐이지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성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p> <p style="text-align: right;">〈 김창기 위원 〉</p>
문화공보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서초구 소식지 배부 철저</p> <p>매월 140,000부씩 발행하는 서초구소식지가 직접 주민들에게 얼마나 배부되는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됨. 서초구소식지는 행정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는 공보성이 있기에 서초구소식지의 대주민 전달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p> <p style="text-align: right;">〈 허명화 위원 〉</p>
문화공보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 징수 철저</p> <p>서초구 소식지 광고료 체납액이 2001년 9월 30일 현재 징수결정 액 46,425천원 중 35,875천원을 수납하고 10,550천원은 체납되 어 징수율 77.28% 실적은 세목 성격상 이해가 어렵고 법적근거 미련 등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견
문화공보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서초구소식지 의회소식 지면 개선요구</p> <p>매월 발간되는 서초구 소식지에 의회소식지면이 있으나 2면에 게재하지 아니하고 계속 5면에 게재하고 있는 바, 이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면배정을 시정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문화공보과	건의	<p>o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의 구립도서관 또는 종합스포츠센터 운영방안 검토</p> <p>내곡동 공동시설부락 운영을 그 동안 서울대학교에 위탁 관리해 오다가 직영체제로 전환하기로 하였는 바 그간 많은 논란이 되어 온 동 시설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컨설팅기관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보며, 또한 3,4층을 독서실로 개조한다고 하는 바 이미 서초구에는 많은 독서실이 설치되어 있어 독서실의 난립이 우려되므로 이곳을 차라리 구립도서관으로 변경하던지 종합스포츠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문화공보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서초구소식지 개선요구</p> <p>구청에서 예산으로 발간하는 서초구소식지가 각 가구에 제대로 배부되지 아니하고 아파트입구 등에 쌓여 있는데 소식지 발행부수를 줄이고 배부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문화공보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10억이상 투자사업 계획의 투융자 심사 확행 등 법령준수 철저</p> <p>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반포2동에 구립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서에 158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지만 동 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계획을 변경시켜 무위로 돌아간 사업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10억원 규모이상의 투자 사업은 투융자사업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진행시키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를 지양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기획재정국]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견
기획예산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투자사업의 철저한 사전검토 및 예산편성 사업 취소 변경 등 시행착오 예방</p> <p>투자사업은 초기부터 치밀한 당위성과 가능성을 점검하여 계획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허명화 위원 〉</p>
기획예산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사업취소 보류로 인한 과다불용 방지.</p> <p>중·단기 사업예산 편성시 충분한 사전심사 분석하여 세출예산의 불용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여 그로 인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과정에서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사업계획에 신중한 검토가 소요됨.</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기획예산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p> <p>정책의 결정은 신중성이 결여된채 사업이 계획되어 예산까지 편성되었다가 취소되고 변경되는 것은 매년 제출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가 되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역시 매년 연동제라고 하나 연도별 사업이 연계되지 않고 단절되는 졸속 계획이라고 판단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신중함이 결여된 것을 시정하여 사업의 시행착오의 연속에서 오는 인력, 예산낭비의 초래를 지양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허명화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지적사항)
가정복지과	처리요구	<p>o 경로당 화재예방대책 철저</p> <p>동절기를 맞이하여 동네어르신들의 휴식처인 경로당에 대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순발력이나 기동력이 떨어지는 노인들께 평소에 화재예방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안락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위 생 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도로변등 영업장소확장 영업행위단속</p> <p>일부 위생업소등이 영업장소를 보도등 도로변까지 영업장소를 확장하여 영업행위를 하여 도로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위 생 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직원들에게 업무교육 철저</p> <p>위생과 행정처분시 개정된 관련법규를 사전숙지를 못하여 종전 규정에 준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면허세 25건씩이나 과다부족한 사실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는 행정능력부재라는 질책을 면키 어렵고, 영세 업주들에게 설득할 수 없는 관행적 행태로 신뢰성에도 문제가 되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업무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지적사항)
사회복지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신규 투자사업의 투융자심사 등 법령이행 준수 촉구</p> <p>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겠다고 서초동 383의 17필지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로 40여 억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84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받지 않은 점과 1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역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거쳤어야 했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가정복지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여성조직 지원예산 운용의 합리적 집행 철저</p> <p>구 여성조직 운영관리에 있어 금년도 예산 집행한 현황을 살펴 보면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운영비, 새마을 부녀 회원 간담회 운영비, 직원부인 자원봉사자 간담회 운영비 등으로 전체예산 2백7십 만원의 대부분인 2백1십8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이러한 내용들은 여성조직을 육성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향후 우리 구의 많은 여성조직을 지원하는데 동 예산을 중점적으로 집행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가정복지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합리적 예산편성 및 업무과다부서 개편검토</p> <p>가정복지과는 사업예산이 많아 계속 불용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 무계획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한 불용액을 계속발생 시킬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시 철저한 검토 후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인력이 부족하다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1.2과로 분할 관장하는 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청소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음식물쓰레기처리 고속발효기용기설물 철거 녹지대 유지관리 철저</p> <p>아파트주변 시설녹지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고속발효기 및 고속발효기보호용가설물을 설치하였으나, 발효기의 고장 및 사용중지로 인한 발효기 및 가설물 철거한 녹지대를 철저히 유지하기 위하여 수목 등을 식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청소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음식물 잔반처리 수거용기 관리 철저</p> <p>현재 음식물 수거용기 3,600개를 18개 각동에 배부한 현황을 동별 현실적 필요량과 파손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이상의 보유로 인한 예산낭비 및 관리에 문제가 되므로 음식물 수거의 효율적 관리 목적에 근접한 계획을 수립할 것과 음식물 배출전용 비닐봉투사용 배출에서 음식물 용기에 직접 수거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획기적 쓰레기 환경개선에 앞서가는 서초구가 되도록 신지식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사회복지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공정성 확보 철저</p> <p>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청탁과 인정에 치우쳐서는 안됨. 물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 있어 법적인 조건을 대상자들이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여 선정되는 사례가 왕왕 많으니 각별히 참고하여 엄격한 사전조사로 선정하기 바라며, 현재 선정되어 혜택을 받는 수급자들도 재심요망됨.</p> <p style="text-align: right;">〈 천승수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지적사항)
청소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건축폐기물 집하장 민원예방 및 장소이전 검토 요구</p> <p>건축폐기물 중간집하장 사용 연장 허가에 따른 양재지동 차화원, 신망애의 집, 인근 우성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동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향후 동 중간집하장이 너무 주민생활권과 인접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으므로 다른 한적한 곳으로의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청소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폐기물집하장 민원대책수립 철저</p> <p>신망애 집 아래 건축물폐기물집하장이 위치하고 있는 바, 폐기물운반시 도로변미관 및 주변먼지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많은 양이 적치되고 있어 민원 억제부도시 폐기물처리 문제등이 있으므로 장소이전 등 대책이 요망됨.</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청소행정과	건의	<p>o 효율성이 저하된 고속발효기의 폐기 등 예산낭비 요인제거</p> <p>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71대 중 가동되고 있는 것이 36대이며 절반에 가까운 35대가 가동이 중지된 것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도입은 실패한 정책이 분명함. 또한 동 기계들의 이설비용으로 매년 예산을 행하고 있어 예산의 낭비가 심하므로 이를 전면 재검토하여 내용연한이 2002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도 못하는 기계들을 이설시킨다고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기계들은 과감히 폐기 처분하여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소관부서	구분	처리 의견 (지적사항)
청소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 청소 종합시설의 차량정비 시설물 전면 재조정 촉구</p> <p>원지동 청소종합시설에서 차량 종합정비 관리를 수행함에 따라 차량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까지도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실제로 이곳에서 정비하는 차량의 추이를 살펴 보면 청소행정과 소속 차량이 39대, 기타 차량이 73대로 청소행정과 관련된 차량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반 차량의 정비 비율이 높으므로 청소종합시설의 시설물 설치를 전면 재조정하여 차량 정비하는 장소를 다른 적당한 곳으로 이전시킬 것을 촉구함.</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청소행정과	건의	<p>○ 음식물쓰레기 처리 근본대책 마련</p> <p>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허명화 위원 〉</p>
청소행정과	처리요구	<p>○ 재활용 관리기금의 효율적 집행 촉구</p> <p>재활용품관리기금의 적립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13억원, 2002년도에 3억원이 추가 조성되어 총 16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에 동 기금의 금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재활용 센타 시설비로 9천여만원과 리사이클 경진대회 등에 집행하였는 바 동 기금을 적립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생활복지국]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지적사항)
생활복지국 공동사항	시정 및 개선요구	<p>o 투자사업의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예산편성 사업 취소 변경 등 시행적외 예방</p> <p>투자사업은 초기부터 치밀한 당위성과 가능성을 점검하여 계획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허명화 위원 〉</p>
청소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음식물 처리 고속발효기의 운영실태 및 향후 처리계획 수립 촉구</p> <p>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공동주택 등에 음식물 처리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왔습니다만, 애당초 설치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음식물처리 고속발효기 운영실태와 폐기처리된 기기는 몇대며,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계속해서 고속발효기 의존할 것인지? · 음식물쓰레기 처리개선을 위한 장기적 계획은? <p style="text-align: right;">〈 권금택 위원 〉</p>
청소행정과	건의	<p>o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감시카메라 확대설치</p> <p>쓰레기무단투기 예방대책 일환으로 감시용 카메라 2대 설치로 예방효과를 거양하겠다고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2대의 설치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단투기가 조기에 단절하기 위해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 곳에 감시용 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것을 건의함.</p> <p style="text-align: right;">〈 권금택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견
재무과 도시정비과	건의	<p>o 예산의 계획성 있는 집행과 사업의 연계 법적인 절차 준수에 의한 예산집행</p> <p>예산을 어렵게 편성하고도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서울시와 연계되는 사업에서 사전협의 없이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 없도록 각별히 해주시고 변경할 때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민전을 기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영화 위원 〉</p>
세무1·2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자치구세 세목교환 문제 대책 강조</p> <p>최근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간의 세목교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어 약 108억 원의 세입결손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우리 구 재정운영방안을 철저히 검토하여 세입 징수 차질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세무1·2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지방세의 악성 체납방지 대책 철저</p> <p>우리구 관내 일부 호텔에서 구세가 악성자치 체납으로 미징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구세체납방지에 대한 철저한 대책수립이 요망됨.</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세무2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지방세 미수납분 시효소멸 결손처분 최소화 노력</p> <p>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2000년 12,497건 615,929천원 시효결손이 발생되었고, 2001년 11월 20일 현재 7,415건에 410,706천원 시효결손된 사항은 체납징수독려에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책임있는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결손액이 최소화 되도록 권고함.</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견
재 무 과	건 의	<p>○ 사유재산 매매계약 성립방안 모색</p> <p>서초구 지역여건에 따라 주차장, 복지시설, 동청사유처 등 수요요건이 발생되지만 국유지 신채비지, 구유지가 없는 지역, 사유재산을 매각하여야 하나, 현행법상 행정요건은 감정가액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 현실적인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적극 요망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건의 및 그 대책이 요구되므로 대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재 무 과	시정개선	<p>○ 경부고속도로 체비지 재산세 미환급 세대 환급절차</p> <p>1994년도에 서울시에 매각한 경부 고속도로 체비지로 인하여 재산세 감소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거 5년 동안이나 부과한 세금을 되돌려 주는 환급절차를 작년 본 의원이 지적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아직도 환급받지 못한 세대가 있는 바 면밀히 조사하여 한 세대도 누락되지 않도록 환급절차에 만전을 기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재 무 과	처리요구	<p>○ 구유재산 소유권이전 관리 철저</p> <p>구유재산조서에 2001년도만 구유재산 추정토지분 2,094필지중 서초구 청사 토지분에 대하여는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그 이유로 현재까지도 서울시 소유로 되어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므로 인한 불이익, 재산권의 분쟁소지도 우려되는 바, 서울시와 행정적 절차에 따라 적극 협의하여 서초구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감하도록 권고함.</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기획예산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행정소송 대응에 대한 철저</p> <p>매년 행정소송건이 증가(2001년 전년대비 33건)되고 있는 실정에 소송발생율이 최소화되는 행정의 정책방향 개선과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송무담당 직원의 전문성, 잦은 인사를 최대한 재고하고 고문변호사와 상담후 승소하여 승소율을 높이는데 철저를 기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기획예산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지시사항 전달 개선</p> <p>구청 확대간부회의시 지시사항중 xxx 조례가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란 지시사항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지시사항이라 사료됨.</p> <p>주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의사결정을 존경해야 하는 행정부의 수반은 일제 치하에서의 식민지 통지개념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됩니다.</p> <p>앞으로 이런 지시사항을 내려서는 안되며, 지시를 받은 각 동장은 의원들에게 전달한다 하여도 참고할 의원은 없으니, 의원에게 전달하지도 말아주기 바라며, 지시사항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 사료됨.</p> <p style="text-align: right;">〈 천승수 위원 〉</p>
기획예산과	건의	<p>o 컴퓨터 기종별 관리철저</p> <p>정보화·인터넷 시대에 서초구 1,427대 총 보유대수가 있다고 했고, 전자결재를 위해서 팬티엄 2급 1,130대가 수요요구에 종에 따라 부족한 2급 기종은 더 구매를 할 계획이라고 하였고, 기종에 따라 구형이 된 즉 486기종은 최대한 업그레이드하여 활용하는 경제적 물품관리로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 및 총괄적인 분류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기획예산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시책 업무 추진비의 효율적 운용실시.</p> <p>각과 시책업무 추진비의 예산편성대비 집행율은 낮으나 효율적 운용이 되지않고, 매년 편성기준에 준하여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합리적 예산 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한 계획과 편성이 요망됨.</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기획예산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활동이 부진한 각종위원회의 과감한 정비 촉구</p> <p>지난번 감사시 본 의원이 지적한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니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의 단 1건만 정비하여 정비실적이 대단히 미흡하므로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동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기획재정국에서 출선, 개최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감히 정리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기획예산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합리적 예산편성 및 업무과다부서 개편검토</p> <p>가정복지과는 사업예산이 많아 계속 불용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 무계획한 예산편성으로 과도한 불용액을 계속발생 시킬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시 철저한 검토 후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인력이 부족하다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1.2과로 분할 관장하는 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